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64
------------	-------

발의연월일 : 2019. 5. 10.

발의자 : 채이배 · 하태경 · 김관영
김삼화 · 금태섭 · 유동수
이동섭 · 박선숙 · 정인화
이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는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채무총액이 변동되어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돋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

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9조제1호).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96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u>다음</u>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p> <p>가. · 나. (생 략)</p> <p>2. ~ 4. (생 략)</p>	<p>제579조(용어의 정의) -----</p> <p>-----.</p> <p>1. -----</p> <p>-----</p> <p>-----</p> <p>----- <u>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u></p> <p>-----</p> <p>-----.</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